

## 전기 배전원에서 발생한 얼굴의 기저세포 암종

성별	남성	나이	만 59세	직종	전기 배전원	직업관련성	낮음
----	----	----	-------	----	--------	-------	----

### 1 개요

근로자 ○○○는 2013년 5월부터 전기 배전원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8년부터 좌측 눈썹에 발생한 소양감을 동반한 홍반성의 피부병변은 상처가 생기면 피가 멈추지 않았으며, 이에 대하여 2019년 6월 27일 로컬 의원에서 조직검사하여 큰 병원 진료를 권유받았다. 이에 대학병원에서 59세가 되던 2019년 7월 15일 얼굴의 기저세포암종(It upper eyelid, basal cell carcinoma)으로 진단받았다. 1.2 \* 0.6 cm의 병변에 대하여 2019년 8월 13일 전절제술 및 피판술 시행하였고 2019년 8월 16일 최종 진단되었다. 근로자는 □사업장 등에서 약 6년 3개월간 전기배전원으로 근무하면서 22,900V의 고압과 햇볕에 노출되었고, 현재는 두건 등으로 노출된 피부를 가리긴 하지만 과거에는 직접적으로 햇볕에 노출된 채 일하여 상병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 하였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2019년 11월 14일에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 2 작업환경

근로자 ○○○는 중학교를 졸업한 이후 1986년까지 직업이 없었다. 군대는 개인사정에 의해 면제받았으며, 야외에서 활동하는 취미생활이나 농사는 거의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1987년부터 1999년까지 거주지에서 개, 염소, 돼지 등 가축을 직접 사육하였다. 그리고 1995년부터 2009년까지(약 15년) 사업주로 회사를 운영하였다. 가축 축사(우사 등), 창고 등을 건축·시공하는 현장에서 철 구조물을 설치하는 기업이었다. 근로자는 그곳에서 주6일 근무하였으며, 사업주로서 사무실에서 사무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으며, 간헐적으로 설치공사 현장 관리감독 및 자재공급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근로자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직장 근무이력이 없으며, 근로자로 근무한 객관적 자료에 의하면 2013년 5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9년까지 □사업장 등 동일한 전기배전공사를 수행하는 업체에서 6년 3개월간 근무하였다.

### 3 해부학적 분류

- 기타 암

### 4 유해인자

- 물리적 요인

## 5 의학적 소견

근로자 ○○○는 2013년 5월부터 전기 배전원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8년부터 좌측 눈썹에 발생한 소양감을 동반한 홍반성의 피부병변은 상처가 생기면 피가 멈추지 않았으며, 이에 대하여 2019년 6월 27일 로컬 의원에서 조직 검사하여 큰 병원 진료를 권유받았다. 이에 대학병원에서 59세가 되던 2019년 7월 15일 얼굴의 기저세포암종(lt upper eyelid, basal cell carcinoma)으로 진단받았다. 1.2 \* 0.6 cm의 병변에 대하여 2019년 8월 13일 전절제술 및 피관술 시행하였고 2019년 8월 16일 최종 진단되었다. 근로자는 2014년 10월 22일 조기위암(adenocarcinoma)으로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가족력으로 어머니가 대장암이 있었고 큰누나가 조기위암 으로 수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기저질환으로 고혈압 있으며 흡연은 하지 않았고, 음주는 일주일에 2-3회 소주 반병을 마셨다. 근로자는 과거에는 등산이나 축구 등 야외에서 하는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았으며 최근 6년 전부터 저녁 8-9시에 1시간가량 걷기 운동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 6 고찰 및 결론

근로자 ○○○(남, 1960년생)는 59세가 되던 2019년 8월 얼굴의 기저세포암을 진단받았다. 근로자는 2013년 5월부터 약 6년 3개월간 전기배전공사 보조 업무를 수행하였다. 근로자의 기저세포암 발병과 관련한 직업환경적 유해 요인으로 자외선을 포함한 태양광의 누적 노출이 있다. 근로자는 6년 3개월간 전기배전공사 보조업무를 수행하면서 태양광에 노출 되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태양광 노출과 기저세포암의 관련성에 대하여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연관성이 부족하였고, 노출기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끝.